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원재활용 목적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 허용 〉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02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730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원재활용 목적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 허용(안 제26조의2제2항 등) ...	2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02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염태영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 7.
3. 회 부 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 2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자원 재활용 목적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 허용(안 제26조의2제2항 등)

개정안은 침수자동차등을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이라 한다)를----- ----- . 다만,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생략)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의2. (생략) <신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침수자동차등을 수출하거나 수출

현행	개정안
마.·바. (생략) 15.·16. (생략) ② ~ ⑥ (생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의2. (생략) <u><신설></u> 9.·10. (생략)	바.·<u>사</u>.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15.·1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 ----- -----. 1. ~ 8의2. (현행과 같음) <u>8의3. 제58조제6항제1호의3을 위반하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사실 및 자원의 재활용 목적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u> 9.·10.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 단서 및 제58조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수로 인하여 전손 처리된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8조에서는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일부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 등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¹⁾

한편, 침수로 인해 전손²⁾ 처리된 자동차의 경우 현행법 제26조의2제2항³⁾에 따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항은 침수로 인해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 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전손 처리된 자동차 중 일부가 폐차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됨에 따라 수입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에 신설되었음.

그런데 최근 이러한 침수 전손 처리 자동차 및 그 일부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이라 함)의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해외 주요국에서 침수 차량에 대한 수출금지 등의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들이 침수사실 등의 차량정보를 동봉하여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⁵⁾

이에 개정안은 자원 재활용 목적에 한하여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고, 침수자동차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침수자동차등을 수입하거나 매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사실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침수자동차 등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폐차에 따른 환경오염⁶⁾

4) 자료: 국토교통부

5) Erica E. Phillips, Hurricane-Damaged Cars Moving Again as U.S. Exports, The Wall Street Journal, 2018. 4. 5.

6) 폐자동차의 해체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오일, 각종 중금속등이 유출될 경우 침전 혹은 물리 화학적 과정을 통해 토양에 축적되고, 흡착 또는 침전된 중금속은 중요한 수자원의 하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며, 다른 매체를 통해 이동 가능하여 오염지역의 확산을 가져올수

등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면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사실 등을 수입하거나 매수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침수자동차등이 국내에서 해외로 여러 단계의 매매과정을 거치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서면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최종 소비자의 안전 피해 및 국가 신뢰도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잔존가치 활용도 제고, 자원 재활용에 따른 폐기물 감소, 수입국 소비자의 안전 및 국가 신뢰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자원의 재활용’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려는 것인데 ‘자원의 재활용’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을 침수자동차등을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부품으로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재활용은 사전적으로 ‘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침수자동차등을 수리하여 자동차로 다시 사용하는 것도 사전적 의미에서는 재활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있다.(최우진, 이영현, 백정렬, 「폐차잔재물(ASR)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연구」, 전과정평가학회지 제14권 1호, 2013. p.74.)

따라서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허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법안에서 ‘자원 재활용’의 정의가 모호하며, 현지에서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 재활용 목적인지 여부 판단을 개인이 하게 되므로 침수 전손차 수출 전체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자원 재활용 정의 명확화, 수출 가능한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관련 행정적 정비 등에 대한 보완(위임규정 등 법안 수정)이 필요함.

2) 관세청

세관에서 침수차 수출요건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세관에서 수출 심사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관세청으로 침수차량 관련 정보 전송시 ‘재활용 목적 여부’까지 포함하여 전송이 필요함.

3) 손해보험협회

개정안 통과시, 침수전손 차량에 대하여 실제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 반입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됨.

침수전손 차량의 실제 수출 여부를 확인·추적하는 시스템 등 보완책 마련을 선행할 필요 있음.

4)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자원재활용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적절함.

침수전손 사실 및 재활용 목적 고지 의무 및 미이행 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5) 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

침수 전손 차량에 대한 수출 금지 개정안 시행('23.6)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로 법 개정 취지 고려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